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
생활대책 시행공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559호(2019.10.15.)로 지구지정 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**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분들을 대상**으로 공사 내부지침에 의거, 생활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○ **(신청기간)** 2026. 11.16.(월) ~ 2026. 12.31.(목)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월~목 09:00 ~ 11:00 / 13:00 ~ 16:00

금 09:00 ~ 11:00

○ **(신청방법)** 방문 또는 우편

보상 소재지	주소	전화번호
남양주왕숙1	(12105)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40-26, 2층 보상1팀	031-524-□□□□ (1,5구역) 0256, (2구역) 0241, (3구역) 0247, (4구역) 0240, (공통) 0248, 0246, 0242

-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(2026.12.31.)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

2. 대상자 선정기준일

○ 2017. 12. 19. (주민공람공고일(2018.12.19.)의 1년 이전)

3. 시행내용

구 분	공급유형
생활대책	상가부지(27㎡이하), 분양상가, 임대상가

4. 생활대책 신청관련 안내사항

① 「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안내문」은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지구 내 주민 등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**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**

②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 법령 위반, 자격미달,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③ 대상자는 개인에 한정하므로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, 대상자 확정여부는 관련 규정 및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심사 후 개별통지 드릴 예정입니다.

④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보상구역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6일

한국토지주택공사
남양주사업본부